#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922

발의연월일: 2020. 8. 13.

발 의 자:최인호·박상혁·박재호

강선우・전재수・김병욱

송옥주 · 이학영 · 조응천

권칠승 · 박광온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격증은 해당 분야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을 평가·인정하는 것으로 국가 자격증 700여종, 민간 자격증 29,300여종이 있음.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신뢰의 기반이 되므로, 자격제도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되어야 함.

그런데, 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은 법률마다 제각각으로 규정·운영되어 실효성과 형평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법무부장관 등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를 2018년 12월 17일자로 의결하여 권고한 바 있음.

이에 현행법에 가맹거래사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

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4항·제5항 및 제41조제4항 신설).

#### 법률 제 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에게 가맹거래사 등록 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가맹거래사 등록증은 다른 자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41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9조제5항을 위반하여 가맹거래사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대여 받은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가맹거래사의 등록) ① ~	제29조(가맹거래사의 등록) ①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에게 가맹거래
	사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u> &lt;신 설&gt;</u>	⑤ 제4항에 따른 가맹거래사
	등록증은 다른 자에게 대여하
	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41조(벌칙) ① ~ ③ (생 략)	제41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④ 제29조제5항을 위반하여 가
	맹거래사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자 또는 이를 알선한
	<u>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u>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④</u> (생 략)	<u>⑤</u> (현행 제4항과 같음)